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근거를 마련하고, 관할 시(市)또는 군에서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도(道)지사의 검토를 거쳐 제출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
- 지방자치단체를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기능·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의 변화양상 및 적응·관리 사례 등의 주체로 추가함(안 제36조)
-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사전협의 절차를 추가하고, 생태통로 조사결과를 관리대장 기록 또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함(안 제45조 및 제45조의2).
-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45조의3).

II. 검토의견

개정안 제34조의2제1항에서는 현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으로 한정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 주체에 군수를 추가하면서,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군수의 경우 관할 구역의 도시지역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작성 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이 단서조항에서 군수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의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군 내 도시지역의 면적을 확정해야 하므로, 도시지역의 의미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이 도시지역¹⁾”인 것으로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 행	개 정 안	수정의견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제34조의2(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활용)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나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